

#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0월 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0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10월10일)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)

### □ 제안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(2002. 1. 19. 법률 제6619호) 및 동법시행규칙(2003. 4. 1. 보건복지부령 제243호)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과태료 부과대상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.(안 제3조)
-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하 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함.(안 제4조 별표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과태료 부과금액은 개정된 상위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 인가요?</li><li>○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과태료 부과금액 1차가 상황에 따라 7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?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네, 그렇습니다.</li><li>○ 인근 시군이 대부분 그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</li></ul>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- 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-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- 과태료 부과금액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위반자가 없도록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184호
의결 연월일	2003. 10. 15 (제107회)

제안년월일 : 2003년 10월 14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 자체가 법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의 의미가 크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과다하여 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체납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
- 법의 취지와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

## 2. 주요골자

- 본 조례안 제4조 별표의 제1호, 제2호의 1차 부과금액 100만원을 70만원으로, 제3호, 제4호의 1차 부과금액 70만원을 50만원으로 수정 (안 별표)

#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별표의 제1호, 제2호의 부과금액 1차 “100만원”을 “70만원”으로, 제3호, 제4호의  
부과금액 1차 “7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한다

# 신·구조문대비표

[별표]

현		행			개 정 안						수 정 안			
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 (단위:만원)			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 (단위:만원)			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 (단위:만원)		
		1차	2차	3차			1차	2차	3차			1차	2차	3차
1. <u>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</u>	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	40	70	100	1. <u>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.</u>	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1호	100	200	300	(개정안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	70	(개정안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2. <u>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</u>	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	40	70	100	2. <u>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</u>	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제2호	100	200	300	(개정안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	70	(개정안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				3. <u>법 제9조제4항 후 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.</u>	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제1호	70	150	200	(개정안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	50	(개정안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3. <u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.</u>	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제1호	40	70	100	4. <u>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.</u>	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제2호	70	150	200	(개정안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	50	(개정안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1. (생략) 2. <u>위반행위 차수의 기준적용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날부터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</u>					1. (현행과 같음) 2. <u>위반행위 차수의 기준적용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한 날로부터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</u>					(개정안과 같음)				

[수정안 포함]

##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·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
2.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
3.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4조 및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“별지”

[별 표]

**과태료 부과기준 (제4조관련)**

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(단위:만원)		
		1차	2차	3차
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	70	200	300
2. 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	70	200	300
3.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	50	150	200
4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2호	50	150	200

1.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2.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적용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</p> <p>2.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</p> <p>〈신 설〉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시장은 법 제34조 및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3조(부과대상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</p> <p>2. 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</p> <p>3.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</p> <p>4. (중전의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4조 및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.</p>